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장경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mik337@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0. 10. .

발 의 자 : 장경민, 성복임,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1. 제안이유

-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존엄한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3조)
- 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다.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사업, 웰다잉 문화 보급·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6조)
- 라. 임종준비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마. 임종관련사업 건전화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이하 “엔딩노트”라 한다)란 자신의 가족 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
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
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
련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엔딩노트
를 교부하여 시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을 기록함으로써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게 할 수 있다.

④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 ① 시장은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시장은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

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누구든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